

	<h1>보도자료</h1> <h2>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</h2>	
--	--	--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			
책임자	신진창 과장(2156-9850)	담당자	홍상준 사무관(2156-9856)	
배포일	'16.1.15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2매

### 제 목 :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

#### 1. 추진 배경

- 「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」(15.6.15.) 및 「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」(15.9.10.)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의 **영업기반을 확충**하고 **건전성 규제**를 정비하는 한편,
    - 주권상장법인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**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**(이하 IFRS)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
- \* 「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」에 따라 '16년부터 상장 저축은행에 IFRS 적용 의무화

#### 2. 주요 내용

##### <영업기반 확충>

##### 가. 지역금융 우수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시 증자요건 완화(제18조의3제2항)

- (현행) 저축은행이 지점 설치 시에는 지역금융 활성화 여부와 무관하게 **최소자본금의 100%**를 증자할 필요
  - \* (서울특별시) 120억, (광역시) 80억, (도·특별자치도) 40억
- (개정) 자산규모 1조원 이하이고 영업구역 1개인 저축은행의 **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실적이 우수\***한 경우 **요증자액을 최소자본금의 100%에서 50%로 완화**
  - \* (서울·인천·경기도) 전체 신용공여액 중 60%이상 (그밖의 지역) 50%이상

##### 나. 투자한도 규제\* 미적용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확대(제29조)

- \*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액 100% 이하(법 제18조의2)
- (현행) 국채 등에 60%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이 **3영업일 내 환매 가능한 경우**에 투자한도 규제 미적용
  - **채권혼합형 펀드의 경우 통상 환매에 4~5일이 소요**되어 투자한도 미적용 대상에서 배제
- (개정) '5영업일 이내'로 완화하여 투자 범위 합리화

##### <건전성 규제 정비>

##### 다.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자본 건전성 기준 강화(제44조)

-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**BIS비율기준을 7%에서 8% 이상**으로 상향해 **건전성 관리 강화**
  - \* 다만,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'18.1.1부터 적용 (유예기간 약 2년)

##### 라. IFRS 적용에 따른 건전성 규제 정비(제36조 내지 제39조)

- '16년 1월 1일부터 외감법\*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인 저축은행에 IFRS를 의무 적용함에 따라 **건전성 관련 규정 정비**
  - \* 기타 저축은행은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선택 적용

##### ① (대손준비금 도입) IFRS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독규정 상 **요적립액에 미달\***하는 저축은행은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

\* IFRS에서는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므로, 일정비율을 의무적립하도록 하는 감독규정을 따를 때에 비해 **충당금 과소설정 가능성**

→ IFRS 도입 저축은행의 **손실흡수능력을 유지**

##### ② (미수이자 건전성 관리) IFRS 도입 시 **연체채권의 미수이자도 자산 인식**이 가능함에 따라, 미수이자를 대손충당금 적립 대상에 포함

→ IFRS 도입 저축은행의 **손실위험 증가에 대비**

## <소비자 보호>

### 마. 금융상품 강요행위(꺾기) 세부내용 구체화(제35조의5 신설)

#### ① 꺾기규제\*의 근거를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화

\* (꺾기규제)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·적금 등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인출을 제약하는 행위 등을 금지(시행령(안) 제8의2제10호)

- 여신거래의 범위를 대출, 사모사채 인수 등으로 구체화
- 중소기업이 차주인 경우, 차주의 관계인인 대표자·임원·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금융상품강요행위도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

#### ②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상품판매시 꺾기로 간주되는(간주규제) 범위를 구체화

① (적용대상)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, 중소기업과 대표자에 대한 금융상품 강요행위를 간주규제 대상에 포함

② (적용 범위) 예·적금 등은 여신실행액의 1% 이상 판매 시, 보험·집합투자증권 등은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판매시 꺾기로 간주

## 3. 향후 일정

- 규정변경예고, 규제심사 등을 거쳐 '16.3.31일 시행 계획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